

# 모델 08

## 원산지 검증 적극대응 모델 (한-미 FTA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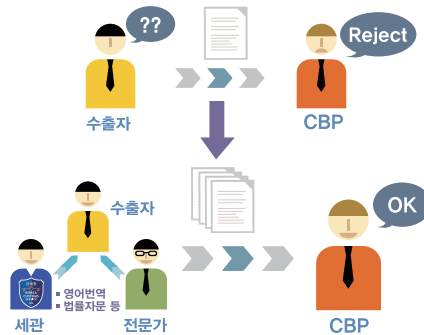
### 01 | 개요

- 계약상대국의 원산지 직접검증에 적극 대처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 충족과, 향후 원산지검증대상 선정위험을 낮추는 검증대응 모델
  - ※ 미국 CBP에게 수출자의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으며, 이는 향후 원산지 검증 선정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

### 02 | 비즈니스 모델

- 미국 관세당국의 검증요구에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
  - 미국 CBP의 원산지검증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원산지 불충족으로 인한 피해와 더불어 수출자의 신뢰도 하락에도 영향을 미침
  - 검증대응 초기부터 우리 세관 및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검증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서류의 제공이나 소명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중요

#### 원산지 검증 적극대응 모델



### 03 | 활용 및 확산분야

- 직접검증 FTA 체결국으로 수출품목
- 특히 한-미 FTA 피 검증 업체